업무메뉴얼

1. 개인위생 체크

1) 건강진단

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영양사 및 조리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진단결과서(구. 보건증)을 발급받아야 한다.

● 발 급 처 : 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

● 발급기간 : 검진일로부터 4~5일 소요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
● 유효기간 : 검진일로부터 1년

2)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

- 매일 작업 전 조리원의 건강상태를 확인
- 설사·발열·복통·구토 증상이 있는 자와 손, 얼굴에 상처나 종기가 있는 자, 본인 및 가족 중에 법정 전염병(콜레라, 세균성이질, 장티푸스 등) 보균자가 있거나 발병한 경우는 완치될 때까지 조리작업 참여시키지 않습니다.



- 손에 상처가 생기면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.



3) 손 위생

손 씻는 시설 및 손세정제, 손 소독제, 종이타워 구비.

4) 복장 위생



5) 앞치마·장갑·행주의 구분 사용



2. 식재료 위생관리

1) 검수

구매한 식재료의 품질, 선도, 위생, 수량, 규격 등이 주문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여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

※ 식재료 구입시 제품명, 유통기한 등의 법적표시사항이 확인 가능한 식품만 구입하여 사용(「식품위생법」제10조)

- 검수 시 준비사항 : 모든 식재료는 바닥 방치 금지(바닥으로부터 60cm이상 높이에서 실 시)
- 검수 시 확인사항
- 식재료의 표시사항, 유통기한, 원산지, 중량, 포장상태, 이물혼입 등 확인하여 검수서에 기록
- 원산지 증빙 서류 보롼(도축검사증명서, 수입증명서 등)
- 냉장식품→냉동식품→공산품의 순서로 실시
- 검수가 끝난 식재료는 곧바로 전처리 또는 냉장·냉동보관(외부포장 제거 후 반입)
- 검수 확인 후 반품이 필요한 식재료는 즉시 반품 또는 별도 보관 후 반품

2) 식재료 보관

모든 식재료는 제품명, 원재료명, 유통기한, 보관방법, 원산지가 적혀 있는 표시사항을 보관하여야 하며, 보관방법에 적혀 있는 방법대로 보관하여야 함.

● 식품 보관방법 표기에 따른 보관 적정온도

보관 적정온도	냉동식품	냉장식품	실온	상온보관 식품	찬 곳 (냉소)	건냉소, 건암소, 서늘한 곳
	-18℃	0~10℃	1~35℃	15~25℃	0~15℃	법적 기준 없음

- 건냉소, 건냉암소,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 보관의 경우 냉장보관을 해도 무방하고, 법적 온오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온에 보관도 가능함. 다만 하절기는 온도가 높아지므로 냉장고 보관을 권장함.
- 식품을 소분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용기에 보관할 경우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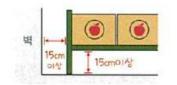




TIP 식품 보관 시 포장지 그대로 밀봉하여 보관할 경우, 투명한 비닐 또는 지퍼백을 이용하여 유통기한이 잘 보이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● 창고 보관 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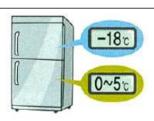






- 식품과 비식품(소모품)은 구분하여 보관
- 세척제, 소독제(화학물질) 등은 식재료와 별도 보 관
- 온도 15~25℃, 습도 50~60% 유지
- 식재료 보관선반은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이상 간격유지
- 직사광선 피하기
- 대용량 제품을 나누어 보관하는 경우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
-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진열
- 입고 순서대로 사용(선입선출)
- 외포장 제거 후 보관
- 식품은 항상 정리정돈 유지

● 냉장·냉동 보관 방법



- 냉장온도 0~5℃. 냉동온도 -18℃이하
- 외부 온도계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온도 확인 및 관 리
- 찬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보관 용량 70%이하 유지
- 냉장고문을 너무 자주 여닫지 말기



- 외포장 박스 제거 후 보관
- 조리한 음식은 덮개가 있는 용기에 담아 충분히 식힌 후 냉장·냉동 보관
-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분 보롼
- 해동한 음식은 재냉동 금지



- 일주일에 한번씩 성에 제거 및 수시로 안팎 청소

3)원산지 관리

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제5조 제3항의 의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함.

■ 원산지 게시 방법





식단표 내 원산지 표시하고 게시

보관장소에 게시



증빙서류 보관

※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

- 한가지의 원산지만 사용할 경우, 원산지 일괄표시가 가능 항
-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, 거래명세서, 도축검사증명서는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·보관
- 원산지는 검수서, 식품자체 또는 보관장소, 식단표에 표 시
-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: 쌀(흑미, 현미, 찹쌀 포함), 콩 (두부류, 콩국수, 콩비지), 배추김치(배추/고춧가루), 소고 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양(염소)고기, 넙치(광 어), 조피볼락(우럭), 참돔, 미꾸라지, 낙지, 뱀장어, 명태 (생태, 동태, 코다리 포함), 고등어, 갈치, 오징어, 꽃게, 참조기, 아귀, 주꾸미, 다랑어

3. 보존식

보존식은 만약의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단체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(「식품위생법」제88조).

- 보존식 대상 : 제공된 모든 메뉴(식사, 간식 포함)
- 보관 용기 : 스테인레스 재질의 각각의 뚜껑이 있는 전용용기 또는 1회용 멸균팩
- 보관량 :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 독립 보관, 완제품은 원상태(포장상태)로 보관

(우유. 떠먹는요구르트 등)

● 보관장소 : -18℃ 이하의 전용 냉동고에서 144시간(만 6일) 동안 보관

(2019/1/1(금) 12시에 담은 점심 보존식 →2019/1/7(목) 12시 이후 폐기)

● 보관시 주의사항 : 식단표, 운영일지와 보존식의 내용물이 일치해야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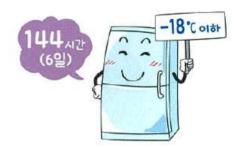


M w	보존일	2017	K	1	111	1	2
	때기일	2017	145	1	**	7	2
오전간식	- 5	비갓목	(10	AT	00	186
	MIN TO MIN						
ଖଧ		, 설명적 조립, 보 이	E B		무학		臣
원 성 오루간식	영광장	조킹, 보	E 3	11	AI.	10	_

제공한 모든 메뉴를(간식 포함) 100g이상 보관

[보존식 기록표] 작성 예시





4. 배식 작업

배식 시에는 손을 깨끗이 세척, 소독하고 위생모, 위생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함. 적절한 배식전용 도구를 사용하여 손이 음식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청결하고 소독된 용 기를 사용함으로서 위생적으로 배식해야 함.

- 배식작업 시 유의사항 : 배식용 앞치마, 위생장갑 착용
- 배식 주의사항
- 조리 후 1~2시간 이내 배식
- 위생장갑을 착용하더라도 도구를 이용하여 배식
- 하나의 도구로 여러 가지 음식을 배식하지 않음(개별 배식도구 사용)
- 식사도구를 바닥에 떨어뜨릴 경우 즉시 씻거나 교체
- 배식 후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

5. 식단 작성

1) 식단작성의 순서

- 급식횟수와 영양량 배분 : 급식제공 횟수는 급식소의 여건에 따라 다르다. 일반적으로 아침, 점심, 저녁의 영양량 배분은 1:1:1 또는 1:1.5:1.5 등으로 한다. 1일 1식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1/3을 제공한다. 일반적으로 1일 필요 에너지의 30~40% 정도를 섭취하도록 계획한다.

- 음식 품목 수 결정 : 식단의 음식 품목 수는 식단가와 식단 유형에 따라 정해지지만, 일 반적으로 주식, 국 또는 찌개류, 주반찬, 부반찬 2, 김치류의 다섯 가지이다. 주반찬은 육류, 가금류, 어류 및 난류 등 동물성 식품을 재료로 한 구이, 조림, 볶음, 튀김류로 하고, 부반찬은 채소를 재료로 한 나물, 무침, 샐러드류가 된다.
- 음식 구성 : 음식 구성 시에는 영양적 요구, 기호도, 음식의 관능적 특성, 예산, 위생, 급식시설 및 기기, 조리인력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.
- 음식별 식재료 종류 및 분량 결정 : 급식 제공 대상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음식을 구성하는 식재료의 종류를 결정하고 각각의 1인 식재료 분량을 산정한다. 식재료는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그 계절에 많이 나는 제철식품을 활용한다.

● 식단 작성시 주의할 식재료 및 음식

기간	종류	종목			
3-10월	패류	소라, 조개 꼬막, 굴, 석화, 홍합 등			
	젓갈류	꼴뚜기젓, 명란젓, 어리굴젓, 오징어젓, 창난젓 등			
4-9월	회류 및 알류	광어, 한치, 참치회, 멍게, 해삼, 성게알, 연어알, 미더덕, 홍어, 동태 곤이 등			
6-9월	어류 및 콩가공품류	콩국, 콩비지, 판두부 등			
연중주의	육내장류	선지, 순대, 곱창, 간, 천엽, 닭근위 등			
	식재료	- 가열공정 없이 제공되는 농·축·수산물(가열 후 사용가능) - 냉동 엽채류, 무침용 건어물, 육회용 쇠고기 - 생굴류(회/무침/석화) - 비포장 가공식품(두부류 등)			
	금지 메뉴	- 삭히는 공정 - 생굴 등 날것의 상태로 제공되는 식품 - 족발 등 제조공정의 위생상태 확인이 어려운 완제품 등			
비고	연중 주의 메뉴	- 조리공정이 복잡하거나 수작업이 많은 메뉴 - 꽈리고추, 두릅, 원추리, 머윗대, 토란대, 생취 등의 미량독소에 의한 장염 - 유발 식재료가 포함된 메뉴 등			

2) 음식의 관능적 특성 및 조리법

- 동일한 음식과 조리법은 쉽게 싫증나게 하므로 다양한 조리법을 사용한다.
- 일반적으로 신맛은 5-25℃, 짠맛은 30-40℃, 단맛은 20-25℃, 쓴맛은 40-50℃, 그리고 매운 맛은 50-60℃에서 가장 잘 느낀다. 한 가지 온도만 이용하여 식단을 구성하게 되면 전체적인 향미의 인식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식단의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.
- 비슷한 색의 음식을 반복하지 않는다. 일반적으로 밝고 따뜻한 톤의 색상일수록 식욕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, 반면에 차갑고 어두운 톤의 색상은 식욕과는 상극으로 분류된다.
- 향은 음식물 자체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할 뿐 아니라 음식의 특성을 이용하여 향을 보완하면 음식의 가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.

- 그 음식 자체에서 기대하는 질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질감을 입안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.
- 각 음식마다 갖은 양념으로 맛을 내면 자칫 같은 맛으로 분류되어 질 수 있다. 그러므로 조리 시 사용하는 양념을 음식별로 배분하여 매운맛과 짠맛, 단맛, 신맛의 균형을 이루도 록 한다.
- 같은 재료로 두 가지 이상의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. 또는 두 가지 음식에 같은 조리법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비슷한 소스가 중복되지 않게 한다.
- 음식에 소요되는 시간 및 사용 기구를 고려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조리가 완성될 수 있어 야 한다.

6. 표준레시피(조리지시서) 작성

1) 표준레시피 개념

- 식수 예측 후 식단표가 나오면 각 음식의 조리를 위해 급식소에 맞게 레시피와 표준레시 피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.
- 레시피(recipe) : 계획된 식단에 따라 음식생산을 위해 필요한 식재료의 양과 조리법을 기술한 것
- 표준레시피(standardized recipe): 메뉴의 생산 공정을 위해 필요한 식재료의 양과 조리 법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기술한 양식으로 급식소에서 상황에 맞는 표준레시피를 작성하 여 사용하고 수정·보완하여 이를 보관 및 활용
- 표준레시피는 식재료명, 분량 또는 부피, 조리방법(재료의 절단크기, 조리시간과 온도, 사용기기, 유의점 및 중요 사항 등), 총생산량, 영유아 1인 제공량, 배식방법 등을 기록한다.
- 일반적으로 표준레시피는 100인 혹은 50인 기준이나, 각 어린이 급식소의 연령대별
- 작성된 표준레시피에 맞춰 구매, 검수, 저장, 조리가 이루어지며, 구매와 조리의 근간이 되다
- 표준레시피를 이용하여 식재료의 구매량을 산정한다.

2) 표준레시피 작성

- 식재료명 및 사용량 표기 : 소량이 필요할 경우 개수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kg 단위 또는 발주 단위로 표기한다.
- 조리방법 표기 : 조리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기한다.
- 식재료의 절단 순서와 방법, 크기를 자세히 표기하며, 채소류의 경우 잘라서 삶을 것인지, 삶아서 자를 것인지, 전체 양을 모두 같은 크기로 절단할 것인지, 어떤 모양으로 잘라야 하는지 까지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.
- 한꺼번에 모두 조리할 것인지 분산조리를 할 것인지, 식재료를 모두 함께 양념하는지 배식 전에 조금씩 양념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까지 표기한다.
- 조리시 유의점 및 중요 포인트를 함께 기록한다.
- 1인 분량 표기 : 1인 제공분량이 다르므로 연령별로 표기하고 g 또는 개수로 표기한다.
- 배식방법 및 기타사항 : 배식방법과 배식시간에 대해 표기하고 식기에 담는 방법, 절단방법 등을 표기한다.

7. 식품 구입 및 발주

1) 구매

- 식단 작성 후 표준레시피에 의해 구매할 식재료가 결정되면 예측된 식수와 급식소 내 보 유하고 있는 해당 식재료의 저장량을 바탕으로 필요한 구매량을 결정하여 구매한다.
- 식재료 구매 시 되도록 식재료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구매하고, 구매 절차는 모두 문서로 남기며, 무표시 또는 무허가 제품,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한다.
- 캔이나 용기 등의 포장이 파손 또는 움푹 들어가거나 오염되어 있는 식품, 곰팡이나 변색 등 상한 것으로 보이는 식품, 따뜻한 식품이 식어 있는 경우, 카운터 위에 뚜껑없이 판매하는 조리된 식품 등은 구매하지 않는다.
- 생활 잡화를 선 구매하고 이후 식품을 구매하도록 한다.
- 실온방치 후 60분이 지나면 식품의 세균수가 급속히 증가하므로 식품의 구매 시간은 1시 간 이내로 한다.
- 직접 구매 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급식소로 돌아와 냉장 보관한다.
- 식품 구매 순서는 '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→과채류→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→육류→어패 류'순서로 구매하고 급식기관에 도착하면 반대의 순서로 냉장 보관한다.

2) 발주

- 각 급식소에서 구매할 식재료를 공급업체에 주문하는 것을 발주라 하며, 명세서 작성, 발 주량 산출, 발주서 작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.
- 국내산과 수입산이 명시된 제품을 구입하고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한다.
- 구매한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는 급식소 식단표에 제시하는데 활용한다.
- 원산지 미표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(원산지 미표기시 과태료 부과 품목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쌀, 김치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). 구입 시 국내산과 수입산을 명시하여 발주하고, 납품 시 원산지를 거래명세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.
- 구매 시 발주서와 구매명세서, 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회계관리의 지출내역이 맞도록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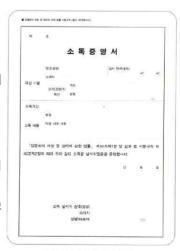
8. 기타

1) 방역관리

조리실, 식품보관실, 식당에는 해충 및 쥐의 서식·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'방역(소독)'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.

● 방역방법

- 소독업으로 신고를 한 전문 방역 업체에 의뢰하여 방역 실시 (※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)
- 방역 후 방역일지를 기록하고, 소독필증(소독증명서)을 첨부 하여 함께 보관



소독필증(소독 증명서) 예시